

\*기존에 정오 공지했던 시행령 제1조의2(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) 제1항에서 지방교육세 및 담배소비세가 제외된 부분은 원래의 내용이 맞는 것으로 재 정정합니다. (**기본서상의 내용이 맞음**)

1. p33 4. 과세물건 확정 시기(법 제16조) - 오타정정

| 수정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정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(9)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: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될 때 | (9)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: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<b>분실된 때</b> |

2. p34 5. 적용 법령과 과세환율(법 제17, 제8조) - 오타정정

| 수정전   | 수정후   |
|---|---|
| (2) 과세환율 [법 제18조]<br>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법 제17조(적용 법령)에 따른 날(보세건설자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일 한 날을 말한다)이 속하는 주의 전주(前週)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. | (2) 과세환율 [법 제18조]<br>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법 제17조(적용 법령)에 따른 날( <b>보세건설장에</b>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일 한 날을 말한다)이 속하는 주의 전주(前週)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. |

3. p36 2) 특별납세의무자(법 제19조 제1항) - 굵은글씨

| 수정전   | 수정후  |
|---|--|
| ① 외국물품인 선박용품, 항공기용품, 차량용품, 국제무역선·국제무역기·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: 하역허가를 받은 자 | ① 외국물품인 선박용품, 항공기용품, 차량용품, 국제무역선·국제무역기·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: <b>하역허가를 받은 자</b> |

4. p148 (6) 자료제출 - 오타정정

| 수정전   | 수정후  |
|---|--|
| ② 덤프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| ② 덤프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<b>증빙자료</b> 3부 |

5. p158 (1) 원칙적인 부과방법 √ 핵심체크 - 오타정정

| 수정전  | 수정후   |
|--|---|
| ①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<br>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| ①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<br>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 안에서 <b>결정한 율을</b>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|

6. p159 (2)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 - 제목삭제

| 수정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정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(2)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 | <b>(2)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</b> |

7. p159 (3)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- 제목수정

| 수정전                       | 수정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(3)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| <b>(2)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 및 신규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</b> |

8. p162 및 191 (1) 약속 - 2025년 6월 개정사항 미반영

| 수정전   | 수정후   |
|---|---|
| (1) 약속<br>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| (1) 약속<br>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( <b>전자문서를 포함한다</b> )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( <b>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</b> )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|
| (1) 약속<br>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<b>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을 제의</b> 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| (1) 약속<br>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<b>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을 제의</b> 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( <b>전자문서를 포함한다</b> )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( <b>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</b> )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|

9. p188 (1) 원칙적인 부과방법 - 띄어쓰기 및 오타정정

| 수정전   | 수정후   |
|---|---|
|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. |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<b>보조금률의</b> 범위 안에서 <b>결정한 율을</b>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. |

10. p209

| 수정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정후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특별긴급관세액 계산식에서 세율 퍼센트 앞에 X(곱하기) 누락 | 아래와 같이 X(곱하기) 추가 수정 |

(4) 가격기준

가격기준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.

| 기준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하락률    | 특별긴급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0퍼센트 초과<br>40퍼센트 이하 | 기준가격 X (하락률 - 10퍼센트포인트) X 30퍼센트             |
| 40퍼센트 초과<br>60퍼센트 이하 | 기준가격 X [9퍼센트 + (하락률 - 40퍼센트포인트) X 50퍼센트]    |
| 60퍼센트 초과<br>70퍼센트 이하 | 기준가격 X [19퍼센트 + (하락률 - 60퍼센트포인트) X 70퍼센트]   |
| 70퍼센트 초과             | 기준가격 X [29.5퍼센트 + (하락률 - 70퍼센트포인트) X 90퍼센트] |

11. p252 1.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(법 제92조) - 오타정정

| 수정전   | 수정후   |
|---|---|
| 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할 법인을 포함하다)가 환경오염(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)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·기구 등이 <b>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</b> | 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<b>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</b> )가 환경오염(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)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·기구 등이 <b>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</b> |

12. p262 3.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(시행규칙 제55조) - 오타정정

| 수정전  | 수정후   |
|--|---|
| 상기 1. ㉠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 | 상기 1. <b>(1)의</b>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 |

13. p341 (1) 감치대상(법 제116조의4 제1항) - 오타정정

| 수정전  | 수정후   |
|--|---|
|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(세관장이 부과·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(監置)에 처할 수 있다. |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(세관장이 <b>부과·징수하는</b>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(監置)에 처할 수 있다. |

14. p465 4. 특허보세구역의 설치·운영의 특허의 기준(시행령 제189조) - 2025년 8월 개정 미반영

| 수정전  | 수정후  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</li> <li>② 법 제175조(운영인의 결격사유)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</li> <li>③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위험물 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<b>유해화학물질</b>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(이하 이 호에서 “위험물품”이라 한다)을 장치·제조·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-② 기존과 동일</li> <li>③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위험물 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<b>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</b>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(이하 이 호에서 “위험물품”이라 한다)을 장치·제조·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</li> </ul> |

15. p546 ‘보세운송 승인대상 및 예외’ √ 핵심체크(시행령 제226조 제3항) - 2025년 8월 개정 미반영

| 수정전  | 수정후  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보세운송된 물품 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</li> <li>② 「검역법」·「식물방역법」·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등에 따라 검역을 요하는 물품</li> <li>③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위험물</li> <li>④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<b>유해화학물질</b><br/>(이하생략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-③ 기존과 동일</li> <li>④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<b>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</b><br/>(이하생략)</li> </ul> |

16. p688 (2) 2천만원 이하의 벌금 - 오타정정

| 수정전  | 수정후  |
|--|--|
|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과실로 ②, ③ 또는 ④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|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과실로 ②, ③ 또는 <b>⑤</b>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|

17. p759 24.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(법 제33조) - 개정사항 미반영 정정

| 수정전   | 수정후  |
|---|--|
| <p>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p> <p>① 법 제208조 제4항(매각대행기관)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</p> <p>② 법 제233조의2 제2항(수출입물품 원산지정보 수집·분석)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</p> <p>③ 법 제255조의2 제2항 후단(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 대한 심사)에 따라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</p> <p>④ 법 제322조 제5항(통계자료 및 통계의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)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</p> <p>⑤ 법 제327조의2 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</p> <p>⑥ 법 제327조의3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</p> <p>⑦ 법 제32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</p> <p>⑧ 다음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</p> <p>㉠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</p> <p>㉡ 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</p> <p>㉢ 법 제116조의2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</p> <p>㉣ 법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</p> <p>㉤ 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</p> <p>㉥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</p> <p>㉦ 법 제176조의3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</p> <p>㉧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</p> <p>㉨ 법 제232조의3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</p> <p>㉩ 법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죄조사심의위원회</p> | <p>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p> <p>① 법 제208조 제4항(매각대행기관)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</p> <p>② 법 제233조의2 <b>제1항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</b></p> <p>③ <b>법 제255조의2 제2항 후단(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 대한 심사)에 따라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 (삭제)</b></p> <p>④ 법 제322조 제5항(통계자료 및 통계의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)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</p> <p>⑤ 법 제327조의2 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</p> <p>⑥ 법 제327조의3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</p> <p>⑦ 법 제32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</p> <p>⑧ 다음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</p> <p>㉠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</p> <p>㉡ 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</p> <p>㉢ 법 제116조의2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</p> <p>㉣ 법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</p> <p><b>㉤ 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(삭제)</b></p> <p>㉥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</p> <p>㉦ 법 제176조의3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</p> <p>㉧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</p> <p><b>㉨ 법 제232조의3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(삭제)</b></p> <p>㉩ 법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죄조사심의위원회</p> |

(이상)